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이용 협조 요청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3088호, 2022. 12. 20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74호, 2022. 12. 2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이용 협조 요청 관련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,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(제2호의3 및 제4호의2의 권한은 제외한다)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위임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(제2호의4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)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위임한다.	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
1. ~ 2의2. (생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2의3.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</u>	<u><삭 제></u>
2의4. ~ 4. (생략)	2의4. ~ 4. (현행과 같음)
<u>4의2.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</u>	<u><삭 제></u>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2